



2 조세특례제한법

【법인세 분야】

1.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·합병 지원세제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

(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·제12조의4)

가. 개정취지 : M&A를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 인수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*의 10%를 법인세 세액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특허권 등 평가액 또는 기업 순자산시가의 130% 초과액 (주식인수시에는 인수지분율을 곱한 금액) • 주식 인수시 지분율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분율 50% 이상 취득 (경영권 인수시에는 30% 이상) • 사후관리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년 내 지분율 감소시 공제세액 전액 추징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• (좌 동) • 사후관리 방법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분율 요건 유지 못한 경우 : 공제세액 전액 추징 지분율 요건 유지한 경우 : (공제세액×감소한 지분율) 추징 • 2021.12.31.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사후관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

2. 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

(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)

가. 개정취지 : 창업·벤처기업 활성화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창업기획자* 등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또는 간접 투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 법인세 비과세</p> <p>* 초기창업자 선발·투자·보육이 주된 업무인 자(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§2)</p> <p>• 간접투자 방법 :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</p>	<p>• 간접투자 방법 확대 :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포함</p> <p>*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에 따라 창업기획자(법인)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가능</p>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3.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 (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)

가. 개정취지 : 기업 투자활성화 유도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〈신 설〉</p>	<p>□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지원내용) 기준내용연수*의 50%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「법인세법」, 「소득세법」에서 자산의 유형 및 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기준 감가상각기간 • (대상자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중소·중견기업 : 사업용 고정자산(조특령 §25의3②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계 및 장치, 공구, 기구, 비품 - 차량 및 운반구, 선박 및 항공기(운수업·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) ② 대기업 : 혁신성장 투자자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·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(조특법 §25의3③) -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(조특법 §25의5)



• (취득기간) 2018.7.1. ~ 2019.12.31.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8.7.1.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

4.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)

가. 개정취지 : 자유무역협정(FTA) 피해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무역조정지원기업* 과세특례 * FTA 발효로 매출액·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• 요건(①+②) ①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② 1년 이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• (특례)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연장 • 2021.12.31.

5.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

(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·제39조·제40조·제44조)

가. 개정취지 :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재무구조개선계획*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* ① 「기업구조조정촉진법」에 따른 경영정상화 계획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와 특별약정 ③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의 적기시정 조치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연장



-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시
 -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
- ② 주주(법인)가 채무를 인수·변제시
 - (주주) 채무 인수·변제금액 손금산입
 - (해당법인)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
- ③ 주주(법인)가 자산을 증여시
 - (주주) 증여자자산가액 손금산입·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
 - (해당법인)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
-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
 - (금융기관)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
 - (해당법인)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

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

• 2021.12.31.

6. 지주회사 설립·전환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(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)

가. 개정취지 : 지주회사 설립·전환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지주회사 설립·전환을 위하여 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 까지 과세이연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 	<p>□ 적용기한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1.12.31.

7.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(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)

가. 개정취지 :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

나. 개정내용

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*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* 지분 20% 이상 보유한 법인의 주식 •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• (적용기한)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연장 • 2021.12.31.

8.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(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)

가. 개정취지 :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특정업종*의 법인간 합병 후 중복자산을 양도 하는 경우 *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, 의료용기기 제 조업, 건설업, 해상운송업, 선박건조업 •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분할익금산입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연장 • 2021.12.31.

9. 금융기관의 자산·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

(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)

가. 개정취지 : 선제적인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*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*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의 적기시 정조치 중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인수 • 인수한 부채를 손금산입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연장 • 2021.12.31.



10.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)

가. 개정취지 : 서민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*을 신축하여 임대시 해당 주택임대소득을 최초 소득발생 연도부터 8년간 100% 소득공제 *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상 공공지원·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 	<p>□ 적용기한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1.12.31.

11.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과세특례 정비(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)

가. 개정취지 :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상황 감안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*하는 경우 과세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이전 •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의 금산입 - (적용기한) 2018.12.31. • 성장관리권역*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전후 법인세를 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 *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인천 등 포함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 	<p>□ 양도차익 과세이연은 적용기한 연장하고, 이전 기관 법인세 감면은 적용기한 종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적용기한 연장 - 2021.12.31. • 적용기한 종료



12. 비농업인이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감면 소득 조정
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신설)

가. 개정취지 : 감면 소득 범위를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소득으로 명확화, 비농업인 소유 농업회사법인과 일반법인 간 형평성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년간 50%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감면 대상 소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농업·농축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축산업·임업 소득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 소득 - 농산물 유통·가공·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* * 소득범위는 예규로 운영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감면 대상 소득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 동) - (좌 동)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산물 유통·가공·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• 비농업인 지분율 50% 초과·자본금 80억원 초과시에는 농업생산과 관계없는 업종* 소득은 감면 미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유통·서비스업 관련 소득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(소득 명확화) 2019.1.1. 이후 게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- (소득 감면 조정) 2019.2.12. 이후 신설되는 농업회사법인부터 적용

13.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 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)

가. 개정취지 :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합리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사후관리 사유*로 과세이연 받은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</p> <p>*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처분 등</p> <p>• 이자상당액 : 익금산입액 × 과세이연 일수 × 이자율</p> <p>※ (현물출자 과세특례)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시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이연</p>	<p>□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</p> <p>• 이자상당액 : 과세이연세액 × 과세이연 일수 × 이자율</p>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2.12. 이후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

14. 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* 개선 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)

* 투자·임금증가·상생협력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(미환류소득)에 추가과세(20%)하는 제도

1)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계산방법 변경

가. 개정취지 :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기업의 과세 합리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대상 기업소득</p> <p>• 개별기업 기업소득 중 3,000억원 초과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</p>	<p>□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계산방법</p> <p>•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 3,000억원 초과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</p> <p>– 연결집단 내 개별기업의 과세대상 기업소득 계산방법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: $\frac{\text{연결법인의 기업소득}}{\text{합계액}^*} \times \frac{\text{개별 연결법인의 기업소득}^{**}}{\text{연결법인의 기업소득의 합계액}^{**}}$</p> <p>* 3,000억원 초과시 3,000억원으로 함</p> <p>** 개별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및 연결법인의 기업소득의 합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</p>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2.12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

2) 기업소득 계산시 수협은행 공적자금 상환액 차감

가. 개정취지 : 공적자금의 조기 상환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시 과세대상 기업 소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세방식 : A, B중 선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[기업소득 × 65% - (투자+임금증가+상생)] × 20% ② [기업소득 × 15% - (임금증가+상생)] × 20% • 기업소득 계산방법 : 각 사업연도 소득 + 가산항목 - 차감항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가산항목) 국세 환급금 이자, 일반 수입 배당금 익금 불산입액, 투자자산 당기 감가상각분 - (차감항목) 법인세액, 법령상 의무적립금, 이월결손금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수협은행의 경우 기업소득 계산시 공적자금 상환액 차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동) • (좌 동) - 공적자금 상환액 추가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2.12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3) 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시 투자 범위 조정

가. 개정취지 :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투자의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계 및 장치, 공구, 기구 및 비품, 차량 및 운반구 등 • 무형고정자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허권, 어업권, 채취권 등 •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투자의 범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동) • (좌 동) •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도 포함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2.12. 이후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



15.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(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·제104조의12)

가. 개정취지 : 국민행복기금의 원활한 운영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신용회복목적회사* 지원 과세특례</p> <p>* 국민행복기금 :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, 금리·만기 등 조정,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</p> <p>① 금융기관이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·출자 시 손금산입</p> <p> - 출자의 경우 취득주식 처분시 손금산입한 금액을 익금산입</p> <p>② 신용회복목적회사는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및 손금산입</p> <p> -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</p> <p> -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0년 후 환입(익금산입)</p> <p>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</p>	<p>□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</p> <p>① (좌 동)</p> <p>② 미상계 손실보전준비금 환입 시기 연장</p> <p> - (좌 동)</p> <p> - 적립 10년 후 → 15년 후</p> <p>• 2021.12.31.</p>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손금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 적용

16.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(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·제121조의27·제121조의28·제121조의29·제121조의30·제121조의31·제121조의32)

가. 개정취지 :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</p> <p>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시</p> <p> -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</p> <p>② 주주(법인)가 채무를 인수·변제시</p> <p> - (주주) 채무 인수·변제금액 손금산입</p> <p> - (해당법인)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</p>	<p>□ 적용기한 연장</p>



- ③ 주주(법인)가 자산을 증여시
 - (주주)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·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
 - (해당법인)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
 -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
 - (금융기관)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
 - (해당법인)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
 - ⑤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시
 -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
 - 증권거래세 면제
 - ⑥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시
 -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
 - ⑦ 적격합병시 합병대가 중 주식비중 요건
 - 70% 이상으로 완화(원칙 : 80%이상)
- (적용기한) 2018.12.31.

• 2021.12.31.

17.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 확대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)

가. 개정취지 : 기업의 문화비 지출 유도를 통해 문화산업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적용한도 : 접대비 한도액의 20% • 문화접대비 적용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화예술 공연·전시회, 박물관, 체육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- 비디오품, 음반·음악영상물, 간행물 구입비용 등 - 관광공연장*의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가격에 해당하는 금액(식사·주류 등의 가격 제외) <p>*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라 관광공연장으로 등록된 장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	<p>□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동)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 <p>(좌 동)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광공연장 입장권 구입비용 전액 - 소액(100만원 이하)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2.12.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

18.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(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)

가. 개정취지 :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〈신 설〉	<p>□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성과공유 중소기업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-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적용배제 • (공제액)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*의 10%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임원,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제외 • (중복배제)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중복적용 배제 • (적용기한) 2021.12.31.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19.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(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)

가. 개정취지 : 위기지역 창업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〈신 설〉	<p>□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*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(현재 9개) : 군산시, 거제시, 통영시, 고성군, 창원시 진해구, 울산시 동구, 목포시, 영암군, 해남군 • (대상) 지정기간*내 창업(사업장 신설 포함)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고용위기지역(1년)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(2년) • (업종)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(31개) • (감면율)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·소득세 100% 감면



- (감면한도)
 - 중소기업 : 한도 없음
 - 중견·대기업 : 투자누계액 50%+ 상시근로자수 × 1,500만원(청년 2,000만원)
- (최저한세) 적용 제외
- (적용기한) 2021.12.31.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8.1.1.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.1.1.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

20. 중소기업·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(조세특례제한법 제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)

가. 개정취지 : 위기지역 중소기업·중견기업의 신규투자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중소기업·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공제대상) 중소기업·중견기업의 일반사업용 자산 등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 • (공제액) 투자금액 × 1~3%* * 중소기업(3%), 중견기업(1~2%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	<p>□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의 중소기업·중견기업 공제율 상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동) • 2021.12.31. • (좌 동) <p>-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내 투자시 : 중소기업 10%, 중견기업 5%</p>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8.1.1.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21.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(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)

가. 개정취지 : 위기지역 고용 안정과 근로시간 단축기업을 지원하고, 공제방식을 현행 세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재설계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기업 <li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 • (요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: 해당 과세연도 \geq 직전 과세연도 ② 상시근로자 수 : 해당 과세연도 \geq 직전 과세연도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: 해당 과세연도 < 직전 과세연도 • (소득공제액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근로자) 연간 임금감소 총액 \times 50% - (기업) 연간 임금감소 총액 \times 50% +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 \times 75%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 	<p>□ 위기지역 중견기업 포함 및 적용기한 연장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상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 등) - 위기지역 중견기업 • (좌 등) • 기업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 등) - (기업) 연간 임금감소 총액 \times 10% +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 \times 15% • 2018.12.31.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2019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(대상추가) 2018.1.1.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을 2019.1.1.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

22.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·중개업 제외 (조세특례제한법 제6조·제7조)

가. 개정취지 : 가상통화 거래 중개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

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적용 대상) 창업중소기업, 벤처기업, 창업보육센터,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• (업종) 제조업 등 31개 업종 • (감면율) 5년간 50~100% <p>□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적용 대상) 중소기업 • (업종) 제조업 등 46개 업종 • (감면율) 5~30% 	<p>□ 세액감면 대상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배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동) • 암호화자산 매매·중개업 제외 * 통계청 업종변경 7월말 고시예정 • (좌 동) <p>□ 세액감면 대상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배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동) • 암호화자산 매매·중개업 제외 • (좌 동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23. 중소·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(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)

가. 개정취지 : 중소·중견기업 육아휴직 활성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〈신 설〉</p>	<p>□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 인건비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중소기업, 중견기업 • (요건) 근로자(남성 포함)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* *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,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-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추징 • (공제율) 중소기업 10%, 중견기업 5% • (적용기간) 1년 • (적용기한) 2020.12.31.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24.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(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7,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)

가. 개정취지 : 국가균형발전·낙후지역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 기업(사업장 신설기업)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기업도시개발구역·낙후지역(지역개발사업구역)·여수해양박람회특구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, 새만금 사업시행자 • 감면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조업 등 : 100억원 이상 투자 -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 : 50억원 이상 투자 - 연구개발업 : 20억원 이상 투자 - 사업시행자 : 총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• (감면율) 법인세·소득세 3년간 100% + 2년간 50%(사업시행자는 3년간 50% + 2년간 25%) • 감면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 : 투자누계액 50% + Min(①상시근로자수 × 1,000만원, ②투자누계액 × 20%) - 서비스업 : 일반 감면한도와 Min(①상시근로자수 × 2,000만원, ②투자누계액 × 100%) 중 큰 금액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* * 사업시행자는 적용기한 없음 	<p>□ 감면대상 확대, 감면요건 조정, 감면 한도 재설계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낙후지역 감면대상에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상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창업(사업장 신설 포함) 기업과 사업시행자 추가 • 투자금액기준 인하, 고용요건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조업 등 : 20억원 이상 투자 + 30명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 -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 : 10억원 이상 투자 + 15명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 - 연구개발업 : 5억원 이상 투자 +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 - 사업시행자 : 총 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 • (좌 동) •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누계액 50% + 상시근로자수 × 1,500만원(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,000만원) • 2021.12.31. * (좌 동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(사업시행자는 2019.1.1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)



25.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(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)

가. 개정취지 : 국가균형발전·낙후지역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* 입주기업(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) *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기재부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(나주 일반산단 등 10곳) • (업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공단지 :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-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: 제한없음 • (감면율)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준용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법인세·소득세 5년간 50%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 	<p>□ 감면한도 신설, 적용기한 연장 등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(좌 동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인세·소득세 5년간 50% • 감면한도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누계액 50% + 상시근로자수 × 1,500만원(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,000만원) • 2021.12.31.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

26. 제주 투자진흥지구·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(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·제121조의9·제121조의10·제121조의11)

가. 개정취지 : 제주도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제주 투자진흥지구·첨단과학 기술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</p>	<p>□ 감면한도 재설계, 적용기한 연장</p>

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주투자진흥지구·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,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-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• (감면율) 법인세·소득세 3년간 100% + 2년간 50%(사업시행자는 3년간 50% + 2년간 25%) • 감면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 : 투자누계액 50% + Min(①상시근로자수 × 1,000만원, ②투자누계액 × 20%) - 서비스업 : 일반 감면한도와 Min(①상시근로자수 × 2,000만원, ②투자 누계액 × 100%) 중 큰 금액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사업시행자는 적용기한 없음 <p>□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 	<p>(좌 동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누계액 50% + 상시근로자수 × 1,500만원(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,000만원) • 2021.12.31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좌 동) <p>□ 적용기한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1.12.31.
---	--------------	--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
(사업시행자는 2019.1.1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)

27. 연구개발특구·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(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·제21조의20)

가. 개정취지 : 과학기술 혁신생태계·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연구개발특구·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, 연구소기업 -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법에 따른 투자지구 입주기업 • (감면율) 법인세·소득세 3년간 100% + 2년간 50% 	<p>□ 감면한도 재설계, 적용기한 연장 등</p> <p>(좌 동)</p>

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감면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 : 투자누계액 50% + Min(①상시근로자수 × 1,000만원, ②투자누계액 × 20%) - 서비스업 : 일반 감면한도와 Min(①상시근로자수 × 2,000만원, ②투자누계액 × 100%) 중 큰 금액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누계액 50% + 상시근로자수 × 1,500만원(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,000만원) • 2021.12.31.
---	--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

28.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(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)

가. 개정취지 : 금융중심지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금융중심지(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) 창업기업(사업장신설 포함) • (요건)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20억원 이상 투자+10명 이상 고용 • (감면율) 법인세·소득세 3년간 100% + 2년간 50% • 감면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 : 투자누계액 50% + Min(①상시근로자수 × 1,000만원, ②투자누계액 × 20%) - 서비스업 : 일반 감면한도와 Min(①상시근로자수 × 2,000만원, ②투자누계액 × 100%) 중 큰 금액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감면한도 재설계, 적용기한 연장 등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(좌 동)</div> •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누계액 50% + 상시근로자수 × 1,500만원(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,000만원) • 2021.12.31.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

29.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재설계 (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)

가. 개정취지 : 일자리 창출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• (업종) 보건의료기술 관련업 • (감면율) 법인세·소득세 3년간 100% + 2년간 50% • 감면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 : 투자누계액 50% + Min(①상시근로자수 × 1,000만원, ②투자누계액 × 20%) - 서비스업 : 일반 감면한도와 Min(①상시근로자수 × 2,000만원, ②투자누계액 × 100%) 중 큰 금액 • (적용기한) 2019.12.31. 	<p>□ 감면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(좌 동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누계액 50% + 상시근로자수 × 1,500만원(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,000만원) • (좌 동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

30. 지역특구 감면한도 계산방법 규정 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·제61조·제116조의14·제116조의15·제116조의25·제116조의26·제116조의27)

가. 개정취지 :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함에 따라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을 시행령에 규정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(신 설)	<p>□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시근로자 중 15~29세(병역이행기간은 연령에서 빼고 계산)인 근로자 <p>□ 청년상시근로자의 수 계산방법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합</u>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</p>



〈 법 개정내용(§12의2 등) 〉

□ 지역특구 감면제도의 감면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*

* 투자누계액 50% + 상시근로자수×1,500만원(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,000만원)

- (시행령 위임)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계산방법

※ (대상 지역특구) 연구개발특구, 제주 투자진흥지구·첨단과학기술단지, 아시아문화중심도시, 금융중심지, 첨단의료복합단지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,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

31.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(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)

가. 개정취지 :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				개 정				
□ 고용증대세제					□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공제금액)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공제금액) 				
(단위 : 만원)					(단위 : 만원)				
구 분	중소기업		중견 기업	대기 업	구 분	중소기업		중견 기업	대기 업
	수도권	지방				수도권	지방		
상시근로자	700	770	450	-	상시근로자	700	770	450	-
청년정규직	1,000	1,100	700	300	청년정규직	1,100	1,200	800	400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공제기간) 대기업 1년, 중소·중견 2년 • (적용기한) 2020.12.31. 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기업 1년 → 2년, 중소·중견 2년 → 3년 • 2021.12.31. 				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

32. 고용증대세제 적용시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)

가. 개정취지 : 국가보훈대상자 고용지원 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고용증대세제 우대* 대상</p> <p>* 1명 고용시 대 400, 중견 800, 중소 1,100(지방 1,200)만원 세액공제 (일반상시근로자는 중견 450, 중소 700(지방 770만원) 세액공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년(15~29세) • 장애인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지* <p>*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 부상자, 공상공무원 등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추 가〉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추 가〉</p>	<p>□ 우대 대상 추가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(좌 동)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• 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 증(枯葉劑後遺疑症)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<p>※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국가유공자법 상 상이지로 지원 중</p>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33.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(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)

가. 개정취지 : 중소기업 고용 촉진 및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중소기업 • (요건)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	<p>□ 적용기한 연장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(좌 동)</p> </div>

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공제액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청년·경력단절여성) 고용증가인원 × 사회보험료 × 100% - (그 외) 고용증가인원 × 사회보험료 × 50% (신성장서비스업 75%) • (적용기간) 2년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 <p>□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면서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%~120%인 근로자 대상 • (요건) 2018.1.1.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• (공제액) 신규가입인원 × 사회보험료 × 50% • (적용기간) 2년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 	<p>┌ (좌 등)</p> <p>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1.12.31. <p>□ 적용기한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등) • (요건) 2019.1.1.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<p>┐ (좌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19.12.31.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34.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 추가 (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3항)

가. 개정취지 : 8대 핵심 선도산업인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지원 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감면대상) 전기차를 50%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• (감면율) 30% 	<p>□ 감면대상 자동차 대여업자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기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를 50%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• (좌 등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

35. 신성장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

(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별표7)

가. 개정취지 :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세제지원 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연구·인력개발 비용 세액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공제대상) 157개 신성장 동력·원천기술 연구 개발비 <li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-left: 40px;">〈추 가〉 • (세액공제율) 20%~30%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가산공제율*) 수입금액 중 신성장 연구·인력개발 비율×3 * 공제한도 : 10%(코스닥상장 중견기업 15%)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공제대상 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공제대상) 신성장동력·원천 기술에 신기술*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블록체인,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 16개 기술 추가, 4개 기술 확대 • (좌 등) • 2021.12.31.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게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36.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(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)

가. 개정취지 :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신성장 기술의 사업화 세제지원 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• (공제율) 5%~10% • (공제요건) ①~③ 충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·인력개발비 비중 5% 이상 ② 직전연도 R&D비용 중 신성장 R&D 비중 10% 이상(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공제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등) • 공제요건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5% → 2% ② (좌 등)



〈추 가〉	* ①·② 적용 시 신설기업 첫째 투자분은 당해 연도 기준으로 판단
③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	(좌 동)
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	• 2021.12.31.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37. 연구·인력개발비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)

가. 개정취지 : 정부 출연금을 통한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을 받은 내국인 • (과세특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-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 시 익금산입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 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한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동) • (좌 동) • 2021.12.31.

38.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)

가. 개정취지 :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·인력개발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의무 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세액공제 관련 서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액공제 신청서 연구인력개발비용명세서 외 증빙자료 양식 없음 	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·인력개발활동 검증자료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동)



〈신 설〉

- 연구계획서·보고서(전체 연구·인력개발), 연구노트(신성장연구·인력개발) 등* 작성·보관
* 구체적 양식은 시행규칙에 위임

〈신 설〉

- 연구·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과제 총괄표 함께 제출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20.1.1. 이후 게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39. 신성장기술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강화(조세특례제한법 제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)

가. 개정취지 : 신성장 연구·인력개발비용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신성장 연구·인력개발 전담부서 요건 등을 완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연구개발비 중 자체 연구개발비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건비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공제대상 인건비는 시행규칙에서 규정 - 국내 신성장 연구·인력개발 전담부서 등 연구인력 인건비 - 일반 연구·인력개발 전담부서 등으로서 신성장 관련 별도조직 운영시 별도조직 연구·인력개발 인건비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견본품, 원재료비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연구·인력개발과 신성장연구·인력개발에 공통되는 경우 일반연구·인력개발 	<p>□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인정범위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건비 범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 동) - (좌 동) - 일반연구·인력개발 전담부서 등의 신성장 분야 전담 연구인력 인건비 • 견본품, 원재료비 등 요건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연구·인력개발과 신성장연구인력개발에 공통되는 경우 연구·인력 비중에 따라 안분* * 구체적 안분방법 시행규칙에 위임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게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

40.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심의위원회 소속변경 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·제22조의9)

가. 개정취지 :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합리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심의위원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소속) 산업통상자원부 • (심의대상) 신성장연구·인력개발 기술·비용, 신성장 사업화시설 해당여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합리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소속) 산업통상자원부·기획재정부 공동 운영 • (심의대상) 신성장연구·인력개발 기술, 신성장 사업화시설 해당여부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41. 국세청에 연구·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설 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)

가. 개정취지 : 기업들의 연구·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관련 납세협력비용 완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국세청에 연구·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사전 심의 제도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심의 대상) 일반·신성장 연구·인력개발비용 관련 사항 사전 심의 • (운영방법)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정함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42. 디자인 관련 연구·인력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)

가. 개정취지 : 고유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전담부서에서 지출된 연구·인력개발비용 등만 세제 지원됨을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□ 국세청에 연구·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사전 심의 제도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• 전담부서* 연구원** 인건비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기업부설연구소, 창작전담부서 등 ** 전담부서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 • 과학기술분야 위탁연구비 	□ 디자인 관련 연구·인력개발비용 인정범위 합리화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삭 제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담부서* 연구원** 범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상 디자인전문회사 추가 ** 연구·인력개발을 수행하는 디자인 전문인력 추가 • 과학기술·산업디자인 분야 위탁연구비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20.1.1. 이후 게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43. 콘텐츠 분야 연구·인력개발비 합리화 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·제9조·별표6)

가. 개정취지 : 연구·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콘텐츠 분야에 사용되는 서체·음원 등 재료비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 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□ 연구·인력개발비용의 인정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담부서 견본품·부품·원재료 및 시약류 구입비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	□ 콘텐츠* 산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·인력개발비용 중 재료비 범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이미지·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 • (좌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담부서의 서체·음원·이미지·창작용S/W 등 대여·구입비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게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

44. 연구·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명확화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)

가. 개정취지 : 정부 출연금 등으로 지급한 인력개발비가 연구·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·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초연구 목적의 연구개발출연금 등 • 연구개발 등 목적의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의 출연금 	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·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동) • 연구·인력개발 목적의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의 출연금

45. 연구개발비 중 시스템 개발비 비용 명확화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·별표6)

가. 개정취지 : 연구·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시스템 개발 비용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위탁 연구·인력개발 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	<input type="checkbox"/> 위탁 연구·인력개발 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, 판매시점 정보관리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·관리·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

46.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범위 명확화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)

가. 개정취지 : 연구·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퇴직급여 관련 비용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 연구개발비의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액공제 대상 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	<input type="checkbox"/> 인건비 범위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조정

- 퇴직금, 퇴직급여충당금
- 법인령 §20에 따른 성과급 등*
- *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성과급

- 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조정
 - 퇴직금, 퇴직급여충당금, 퇴직연금보험료
 - <삭 제>

47.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(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·제25조의4)

가. 개정취지 : 안전설비 투자 지원 강화 및 각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통합·정비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□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정설비 공제율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d9d9;">공제시설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d9d9;">공제율 (대·중견·중소, 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안전설비 등</td><td>1·3·7</td></tr> <tr><td>환경보전시설</td><td>1·3·10</td></tr> <tr><td>근로자복지증진시설</td><td>7(10*)·7(10*)·10</td></tr> <tr><td>연구·인력개발 설비</td><td>1·3·6</td></tr> <tr><td>생산성향상시설</td><td>1·3·7</td></tr> <tr><td>에너지절약시설</td><td>1·3·6</td></tr> <tr><td>의약품품질관리시설</td><td>1·3·6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직장어린이집 및 수도권 밖 종업원 임대주택 ·기숙사에 10%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적용기한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d9d9;">공제시설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d9d9;">적용기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안전설비 등</td><td>2019.12.31.</td></tr> <tr><td>환경보전시설</td><td>2018.12.31.</td></tr> <tr><td>근로자복지증진시설</td><td>2018.12.31.</td></tr> <tr><td>연구·인력개발설비</td><td>2018.12.31.</td></tr> <tr><td>생산성향상시설</td><td>2019.12.31.</td></tr> <tr><td>에너지절약시설</td><td>2018.12.31.</td></tr> <tr><td>의약품품질관리시설</td><td>2019.12.31.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공제시설	공제율 (대·중견·중소, %)	안전설비 등	1·3·7	환경보전시설	1·3·10	근로자복지증진시설	7(10*)·7(10*)·10	연구·인력개발 설비	1·3·6	생산성향상시설	1·3·7	에너지절약시설	1·3·6	의약품품질관리시설	1·3·6	공제시설	적용기한	안전설비 등	2019.12.31.	환경보전시설	2018.12.31.	근로자복지증진시설	2018.12.31.	연구·인력개발설비	2018.12.31.	생산성향상시설	2019.12.31.	에너지절약시설	2018.12.31.	의약품품질관리시설	2019.12.31.	<p>□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제율 조정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d9d9;">공제시설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d9d9;">공제율 (대·중견·중소, 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안전설비 등</td><td>1·5·10</td></tr> <tr><td>환경보전시설</td><td>3·5·10</td></tr> <tr><td>근로자복지증진시설*</td><td></td></tr> <tr><td>연구시험용 시설</td><td></td></tr> <tr><td>생산성향상시설</td><td>1·3·7</td></tr> <tr><td>에너지절약시설</td><td></td></tr> <tr><td>의약품품질관리시설</td><td>1·3·6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직장어린이집(10%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적용기한 연장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d9d9;">공제시설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d9d9;">적용기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안전설비 등</td><td>(좌 등)</td></tr> <tr><td>환경보전시설</td><td>2021.12.31.</td></tr> <tr><td>근로자복지증진시설</td><td>2021.12.31.</td></tr> <tr><td>연구시험용 시설</td><td>2021.12.31.</td></tr> <tr><td>생산성향상시설</td><td>(좌 등)</td></tr> <tr><td>에너지절약시설</td><td>2021.12.31.</td></tr> <tr><td>의약품품질관리시설</td><td>(좌 등)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공제시설	공제율 (대·중견·중소, %)	안전설비 등	1·5·10	환경보전시설	3·5·10	근로자복지증진시설*		연구시험용 시설		생산성향상시설	1·3·7	에너지절약시설		의약품품질관리시설	1·3·6	공제시설	적용기한	안전설비 등	(좌 등)	환경보전시설	2021.12.31.	근로자복지증진시설	2021.12.31.	연구시험용 시설	2021.12.31.	생산성향상시설	(좌 등)	에너지절약시설	2021.12.31.	의약품품질관리시설	(좌 등)
공제시설	공제율 (대·중견·중소, 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안전설비 등	1·3·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환경보전시설	1·3·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로자복지증진시설	7(10*)·7(10*)·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·인력개발 설비	1·3·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생산성향상시설	1·3·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에너지절약시설	1·3·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약품품질관리시설	1·3·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제시설	적용기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안전설비 등	2019.12.31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환경보전시설	2018.12.31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로자복지증진시설	2018.12.31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·인력개발설비	2018.12.31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생산성향상시설	2019.12.31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에너지절약시설	2018.12.31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약품품질관리시설	2019.12.31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제시설	공제율 (대·중견·중소, 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안전설비 등	1·5·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환경보전시설	3·5·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로자복지증진시설*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시험용 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생산성향상시설	1·3·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에너지절약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약품품질관리시설	1·3·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제시설	적용기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안전설비 등	(좌 등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환경보전시설	2021.12.31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로자복지증진시설	2021.12.31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구시험용 시설	2021.12.31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생산성향상시설	(좌 등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에너지절약시설	2021.12.31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약품품질관리시설	(좌 등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투자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

48.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설비 정비 (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)

가. 개정취지 : 신성장산업 설비투자 촉진, 실효성이 낮은 설비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설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정설비 공제율 ① 안전설비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시설 - 유통산업합리화시설 ② 환경보전시설 ③ 근로자복지증진시설 ④ 연구인력개발설비 ⑤ 생산성향상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-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(㉠) -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(㉡) - 물류관리정보시스템 - 지식관리시스템 - 중소기업의 ㉠, ㉡ 임차비용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 ⑥ 에너지절약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등 	<p>□ 공제대상 설비 추가·정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제율 조정 ① 안전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 동) - 〈삭 제〉 ② (좌 동) ③ (좌 동) ④ (좌 동) ⑤ 생산성향상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 동) - (좌 동) - 〈삭 제〉 - 〈삭 제〉 - 〈삭 제〉 - 〈삭 제〉 - 신성장산업 설비*(조특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OLED제조설비, AI구현 HW/SW, 산업용 3D 프린터 등 ⑥ 에너지절약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 동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(설비추가) 2019.1.1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- (설비삭제) 2020.1.1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

49.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 추가 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)

가. 개정취지 : 설치의무가 강화되는 소방시설 투자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* 적용대상 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%(대)·3%(중견)·7%(중소) 세액공제 • 소방시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설치의무가 없는 시설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추 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업재해예방시설, 광산보안시설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조문 통합 및 공제대상 시설 추가·정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제대상 시설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좌 동) 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강화된 설치의무가 소급적용되는 소방시설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예) 영유아보육시설 내 간이스프링쿨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동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50. 내진보강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(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·제30조)

가. 개정취지 : 설치의무가 강화되는 소방시설 투자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제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·중견·중소 : 1·3·7% • 공제대상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② 산업재해 예방시설 ③ 광산보안시설 ④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보강·확장한 시설 ⑤ 기술유출 방지설비 ⑥ 내진보강 설비 ⑦ 해외자원 개발설비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적용요건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제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·중견·중소 : 1·5·10%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

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공제배제)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*시 투자세액공제제한 * 중소기업은 중설투자에 한해 투자세액공제 적용 제한 - (예외)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④,⑤ 설비 투자시 세액공제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외 추가 - ⑥ 내진보강 설비 추가
--	---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51. 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(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)

가. 개정취지 : 5세대 이동통신 투자 활성화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〈신 설〉</p>	<p>□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적용대상)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구입비 • (적용지역)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• (공제율) 2% + 최대 1%* *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율 × 1/5 • (적용기한) 2020.12.31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52.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 (조세특례제한법 제2조)

가. 개정취지 : 기술사업화가 어려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되 기술취득비 세액공제는 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기술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기술이전) 중소·중견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 이전 소득의 50% 세액감면 	<p>□ 적용기한 연장</p>

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기술대여)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대여 소득의 25% 세액감면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 <p>□ 기술취득비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내국기업 • (공제액) 국내 특허권 등 취득금액 × 5% (중소기업 10%)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적용기한) 2021.12.31. <p>□ 적용기한 종료</p>
---	---

53.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(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)

가. 개정취지 : 중소·중견기업 제3자 물류이용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적용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조업 영위 모든 기업 - 당해 제3자 물류 이용비율 30% 이상 -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 • (공제액) 전년 대비 제3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물류비용 증가액의 3%(중소기업 5%)세액 공제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 	<p>□ 적용대상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조업 영위 중소·중견기업 □ (좌 동) • (좌 동) • 2020.12.31.

54.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확대 (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)

가. 개정취지 :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국내 일자리 창출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* 시 법인세·소득세 세액감면</p> <p>*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</p>	<p>□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</p>



- 감면대상
 - ① 완전복귀(해외사업장 폐쇄) : 모든 기업
 - ② 부분복귀(해외사업장 축소·유지) : 중소기업
- 감면율
 - ① 완전복귀(해외사업장 폐쇄) : 5년간 100%, 2년간 50%
 - ② 부분복귀(해외사업장 축소·유지) : 3년간 100%, 2년간 50%
- (적용기한) 2018.12.31.

- 감면대상 확대
 - ① (좌 동)
 - ② 대기업 포함 : 중소기업·중견·대기업
- 감면율
 - ① (좌 동)
 - ② 부분복귀(해외사업장 축소·유지)
 - (비수도권) 5년간 100%, 2년간 50%
 - (수도권*) 3년간 100%, 2년간 50%
 - *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
- 2021.12.31.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

55. 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(조세특례제한법 제22의4)

가. 개정취지 :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정착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금사업자와 스크램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제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거래계좌*나 스크램등거래계좌*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램등사업자 * 매입자납부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 	<p>□ 적용기한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1.12.31.



56.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판단기준 명확화 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·제9조)

가. 개정취지 : 중견기업의 주된 사업 판단기준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 영위시 주된 업종 판단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중소기업) 수입금액 큰 사업 • (중견기업) 기준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주된 업종 판단기준을 중견기업에도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등) • (중견기업) 수입금액 큰 사업

57.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 (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)

가. 개정취지 :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과 중복되는 점을 감안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• (전환요건)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신규사업 비중이 5년내 50% 이상 • (감면율) 4년간 법인·소득세의 50%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적용기한 종료



【국제조세 분야】

1.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(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)

가. 개정취지 : 해외 전문기술인력 유치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적용대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 공자 -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*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* ①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② 독립된 연구시설 ③ 연구시설투자 1억원 이상 ④ 외국인지분 30%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감면혜택) 2년간 50% 감면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 	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년간 50% 감면 • 2021.12.31.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

2. 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·소득세 감면 폐지 (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2)

가. 개정취지 : 내·외국자본 간 과세형평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감면대상사업*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·소득세 감면(5년, 7년) <p>* 업종·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사업 : ①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, ② 외국인투자지역·경제자유구역·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 등이 경영하는 사업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세·소득세 감면 폐지 (폐 지)



- | |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외국인투자 신고후 5년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* 면제
* 개별형 외투자지역·신성장동력산업 등 감면 사업은 부가가치세·개별소비세 포함 • 외투기업이 구입·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면제(최장 15년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동) • (좌 동) |
|--|--|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■ 2019 세법개정안 2019. 7. 25. (기획재정부)

○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(조특법 §5④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중소·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공제대상) 중소·중견기업의 일반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금액 • (공제율) 중소 3%, 중견 1~2% -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투자시 : 중소 10%, 중견 5%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적용기한) '21.12.31. 	<p>□ 규제자유특구*의 중소·중견 기업 공제율 상향</p> <p>*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에 따라 수도권 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동) • (좌 동) <p>-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*가 투자시 : 중소기업 5%, 중견기업 3%</p> <p>**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을 하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동)

〈개정이유〉 지역과 연계된 신산업·신기술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의 투자촉진 유도

〈적용시기〉 규제자유특구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'20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

○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(조특법 §54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공제대상) 중소기업의 일반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금액 • (공제율) 중소기업 3%, 중견 1~2%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투자시 : 중소기업 10%, 중견 5%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적용기한) '21.12.31. 	<p>□ 상생형 지역일자리*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</p> <p>*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자체, 기업,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 근로여건, 투자계획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등)</p> <p>-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며 투자시 : 중소 10%, 중견 5%</p> <p>※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 개정을 전제로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등)

〈개정이유〉 지역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지원

〈적용시기〉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'20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○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 (조특법 §29의7①·②)

종 전	개 정																	
<p>□ 고용증대세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공제액) 전년보다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 : 만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colspan="2">중소기업</th> <th rowspan="2">중견기업</th> <th rowspan="2">대기업</th> </tr> <tr> <th>수도권</th> <th>지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청년* 상시</td> <td>1,100</td> <td>1,200</td> <td>800</td> <td>400</td> </tr> <tr> <td>청년 외 상시</td> <td>700</td> <td>770</td> <td>450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</p>	구 분	중소기업		중견기업	대기업	수도권	지방	청년* 상시	1,100	1,200	800	400	청년 외 상시	700	770	450	-	<p>□ 세액공제 금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변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각 공제금액(청년/청년 외)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함을 명시
구 분		중소기업				중견기업	대기업											
	수도권	지방																
청년* 상시	1,100	1,200	800	400														
청년 외 상시	700	770	450	-														



- | |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공제기간) 대기업 2년
중소·중견 3년 • (사후관리) 공제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간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청년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가공제* 미적용 및 공제받은 세액 추징
* 고용이 증가한 과세연도 다음 해 및 다다음 해 공제분 • (적용기한) '21.12.31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동) • 상시근로자 수 감소 기준연도 변경 :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 → 공제받은 과세연도 • (좌 동) |
|---|--|

<개정이유> 고용증대세제의 합리적 운용

<적용시기> (사후관리) '20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○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

(조특법 §100의32①, 조특령 §100의32②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* * (시행령) 중소기업, 비영리법인 • 상호출자제한기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적용제외 대상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·비영리법인 및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외 • (좌 동)

<개정이유>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외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○ 리스관련 세무처리기준 정비 (법인령 §24⑤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·운용리스를 구분하여 처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감가상각 규정 보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리스이용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변경과 상관없이 종전 감가상각 방식 유지*



〈리스회계기준 변경(K-IFRS 제1017호→제1116호)〉

구분	리스 회사	리스 이용자	
		(개정 前)	(개정 後)
금융 리스	금융리스채권, 이자수익	금융리스자산, 감가상각비, 이자비용	리스자산, 감가상각비, 이자비용
운용 리스	운용리스 자산, 감가상각비, 운용리스료	운용리스료	

※ '19년부터 기업회계기준 변경

* (금융리스)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
(운용리스) 리스회사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

<개정이유> 세무상 리스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의 목적과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산의 실질에 따라 처리

